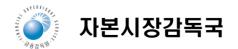
# 목차

#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(안)

2024. 9.



│. 매도가능잔고 산정 1
1. 매도가능잔고 계산1
2. 순보유잔고 계산4
Ⅱ. 독립거래단위 운영 5
1. 내부대차거래 운영 방식5
2. 내부대차거래의 매도가능잔고 반영 등7
3. 독립거래단위 간 내부거래 시 준수 기준8
Ⅲ. 보고 및 공시10
IV. Q & A 12

# 매도가능잔고 산정

# 1. 매도가능잔고 계산

- ① (무차입공매도 판단)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한 수량을 초과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무차입공매도에 해당 (매도주문 제출수량 > 주문 전 소유수량)
- ② (매도가능잔고 계산) 주문 전 소유수량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잔고는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음

매도가능잔고 = <sup>1)</sup> 당일 시작 잔고 + <sup>2)</sup> 회수 가능 수량 + <sup>3)</sup> 매매수량 + <sup>4)</sup> 권리수량 + <sup>5)</sup> 당일 대차잔고 변동

- 1) 당일 시작 잔고 = 순보유잔고(보유총잔고 차입총잔고) + 대차잔고(차입잔고 - 대여잔고)
  - ※ '2. 순보유잔고 계산' 참조
- 2) 회수 가능 수량 = 매도주문 제출 전 또는 당일내 반환요청 등으로 결제일까지 반환이 확정된 대여·담보제공 증권을 가산 ※ '3 대여증권 및 '대당보제공 증권의 소유 인정시점' 참조
- 3) 매매수량 = 미결제 매수체결수량- 미결제 매도체결수량 및 미체결 매도주문수량
- 4) 권리수량 = 2영업일내 증권의 상장·취득·입고 등이 완료될 예정으로 매도주문 전 권리행사, 권리보유, 증권납부, 환매신청 등이 완료된 수량을 가산
- 5) 당일 대차잔고 변동 = 장중 차입계약 확정 수량
   장중 대여 또는 기차입분 중 상환 확정 수량
  ※ '5 차입증권의 소유 인정시점' 참조

- ③ **(대여중권의 소유 인정시점)** 매도주문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여 결제일까지 반환이 가능한 경우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며,
- 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매도주문 이후 반환 요청한 경우에도 소유주식으로 인정함
- 일반적인 대차계약\*에 있어 매도주문 이후 반환요청으로서 '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'란 대차계약상 반환요청 통지 기한 등을 감안하여 매도 주문일(한국시간 기준) 내에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결제일(T+2일)까지 대여증권의 반환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
  - \* 단, 하루 중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 시점에 따라 인도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매도주문일 중 적시(예: 오전 12시 이전)에 중도상환 요청을 완료할 필요

#### 위반사례

- ① 글로벌IB A사는 계열사인 B사에 주식 X를 대여
- ② A사는 T일에 대여 중인 주식 X를 전량 매도주문하고 T+1일 B사에 반환요청(리콜)
- ➡ B사는 표준결제주기(2영업일) 이후인 T+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므로(결제일(T+2일) 이후 반환 가능성 존재) 매도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로 볼 수 없음
- ④ (담보제공 중권의 소유 인정시점)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에 대해 매도주문 전 인도청구를 완료하여 결제일까지 회수 가능하거나,
- 매도주문 후 요청한 경우로서 계약상 매도주문 결제일(T+2일) 까지 회수 가능한 경우 소유주식으로 인정함
- 결제일 이내 회수 가능성은 담보제공 증권의 사용 제한 해제 또는 회수를 위한 조건(원채무 상환, 대체담보 제공 등)과 이를 충족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판단

#### 위반사례

- ① 국내증권사 B사는 글로벌IB A사에 주식 X를 대여하고 A사는 적정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B사에 주식 Y를 대여
- ② A사는 T일 주식 Y를 전량 매도주문하고, T+2일에 B사에 반환요청
- ⇒ B사는 A사에 표준결제주기 이후인 T+4일까지 주식 Y를 반환하면 되므로(결제일(T+2일) 이후 반환 가능성 존재) 매도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로 볼 수 없음
- 5 (차입증권의 소유 인정시점) 매도주문에 대해 신규로 차입하여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문 이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계약이 확정된 경우만 소유한 주식으로 인정됨
- 여기서 '차입계약의 확정'이란 대여자와 차입자 간 차입종목, 수량, 수수료율, 결제일과 같이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단계를 의미하며, 차입 수량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추후 결정되는 계약의 경우 해당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
- 한편, 대여자가 대여증권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차입자는 이를 인지한 후 신속하게 해당 수량을 매도가능잔고에서 제외하여야 함

#### 적용례

- ○차입계약은 공매도 주문 이전에 실제 대여자로부터 종목, 수량 등 조건을 구체적 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,
- 공매도 주문 이전에 차입하여 소유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의해 무차입공매도 (naked short sell)에 해당하며, 공매도로 호가표시를 하였더라도 법령 위반에 해당함

#### 위반사례

- ① 글로벨B D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도스왑(TRS) 주문을 접수하고, 실시간 차입가능수량을 확인
- ② 차입가능수량 한도 내에서 시장에 주문을 제출한 뒤, 체결된 수량만큼 차입을 확정
- ⇒ 해당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유한 증권의 매도로 볼 수 없음

# 2. 순보유잔고 계산

① (순보유잔고 산정시 해당 중권의 범위) 순보유잔고 산정시 포지션을 합산하는 증권은 워칙적으로 해당 증권에만 한정함

#### 적용례

○ DR, 선물, 선도계약, 옵션, 스왑계약 등은 그 자체로는 포지션 산정시 제외되며, 권리행사 등을 통해 당해 증권으로 전환토록 조치한 시점(결제일까지 입고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 이후에 포지션에 합산됨

#### ② 순보유잔고 계산 단위

- (원칙) 매도자(법적실체, Firm-wide)별로 포지션을 합산(netting)하여 산출하며, 특정법인(개인)이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합산하여 순보유잔고를 계산
- **(예외)**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\*에 한해, 일정 조건을 충족 하는 경우 복수의 독립거래단위\*\* 운영이 가능하며(규정 §6-30⑤)
  - \* 은행, 증권, 보험, 자산운용, 외국금융투자업자
  - \*\* 법인 조직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로서 일정요건(구체적인 매매 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조직일 것, 매매시점마다 자체적으로 순보유잔고를 산정가능 할 것, 운영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 등)을 갖추어야 함
  - 공매도 여부는 독립거래단위별로 순보유잔고를 산출하여 판단 가능하나, 순보유잔고 보고는 법인전체의 순보유잔고를 모두 합산하여 법인 명의로 보고
- ③ (순보유잔고 산정 시점) 원칙적으로 매 거래 주문 제출 전·후로 주식 종목별 순보유잔고를 산출하여 기록 및 관리

# 독립거래단위 운영

# 1. 내부대차거래 운영 방식

- ◆ SLB(Stock Lending and Borrowing) 등의 공유풀을 활용한 독립거래 단위 간 내부대차거래 이용 시 결제지연 및 불이행,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내부대차운영기준 수립·운영
  - \* 공유풀을 이용한 독립거래단위간 내부대차거래란 개별 독립거래단위간에 직접 내부대차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, 독립거래단위의 보유잔고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 등을 통해 내부대차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
- 정기적으로 내부대차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, 결제 지연 및 불이행,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준 보완
- 내부대차운영기준은 아래에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되,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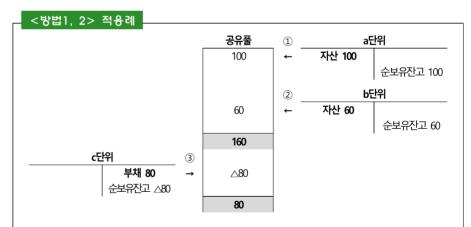
# 방법 1.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매도가능잔고 비교 관리

①(실시간 모니터링) 내부대차거래 이용시 독립거래단위에서 회사 전체 매도가능잔고 이상의 매도주문이 출회하는 경우 각 독립거래단위는 매도주문 전 또는 매도주문일(한국시간 기준) 내에 내부 대여주식의 반환을 요청하는 등 매도가능잔고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

○ 이를 위해 종목별로 독립거래단위별 및 회사 전체 실시간 매도 가능잔고를 산출하여야 하며, 독립거래단위 기준으로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·외부 대차거래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

# 방법 2. 독립거래단위별 매도주문 가능수량 자동 제한

- ② (주문 자동 거부) 내부대차거래 이용 시 공여(供與)측, 즉 순매수 잔고인 독립거래단위의 매도주문 가능수량이 회사 전체 매도 가능잔고 범위 내로 자동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
  - 이를 위해「방법 1」과 같이 독립거래단위별 및 회사 전체 실시간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여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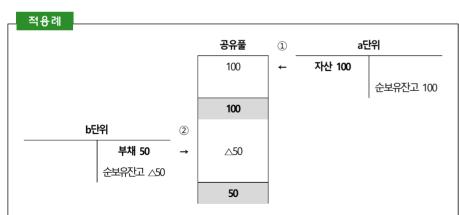


- <**\*\*\*\* < 방법1>** 독립거래단위 a가 회사 전체 매도가능주식 이상을 매도하려는 경우 매도주문 전 또는 매도주문일 내에 SLB 등에 대여주식 반환요청
- <방법2> 독립거래단위 a가 회사 전체 매도가능주식을 초과하는 매도주문 제출 시 수량 축소 또는 주문 차단
  - \* 매도주문 수량 한도 = Min [100(독립거래단위 a 기준), 80(회사 전체 기준)] = 80주

# 2. 내부대차거래의 매도가능잔고 반영 등

# □ 내부대차거래의 매도가능잔고 반영

- 순매수잔고인 독립거래단위가 보유수량을 공유풀에 제공하고 다른 독립거래단위가 이를 활용하여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는 계산 단위별(독립거래단위별) 매도 가능잔고 수량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내부대차거래를 기록하고 독립거래단위별 잔고에 반영하여야 함
- 내부대차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은 회사별로 공유풀 운영방식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
- 예시(아래 적용례 기준) : 독립거래단위 간 직접 거래를 기록(a가 b에 50주 대여)하거나 독립거래단위와 공유풀 간 거래를 기록(a가 공유풀에 100주 대여 + b가 공유풀에서 50주 차입)하는 방법 등



- 매도가능잔고 = 순보유잔고 + 내부 대차잔고 (외부 대차잔고가 없는 경우를 가정)
- ① (독립거래단위 a) 100주 매수  $\rightarrow$  매도가능잔고 = 100주
- ② (독립거래단위 b) 50주 내부차입 & 매도 → 매도가능잔고 = △50 + 50(차입잔고) = 0 (독립거래단위 a) 50주 내부대여 → 매도가능잔고 = 100 - 50(대여잔고) = 50

#### 2 독립거래단위별 매도가능잔고 관리

- ①의 적용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순매수잔고인 독립거래단위 a의 순보유잔고는 순매도잔고인 독립거래단위 b의 내부 차입주식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(100주)하나, 내부 대여로 대차 잔고(= 차입잔고 대여잔고)가 감소(0주→ △50주)함에 따라 매도 가능잔고가 감소(100주→50주)
- 주식을 대여한 독립거래단위 a가 대여주식을 매도하려는 경우 매도주문 전 또는 매도주문일(한국시간 기준) 내에 반환을 요청 하여 회사 차워에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

#### 위반사례

- ① 글로벌IB E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도스왑(TRS) 주문을 접수하고, ⑧부서가 주식 X를 100주 소유한 상태에서 ⑥부서에 주식 X를 50주 대여
- ② ⓐ부서는 대여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100주를 잔고로 인식하고, ⑤부서는 대여한 50주를 잔고로 인식
- ③ E사는 총 150주의 주식을 매도(T일)하고, 다음날 결제부족수량(50주)를 추가 차입 및 대여주식 반환요청(T+1일)
- ⇒ 내부대차거래 관리 미흡으로 대여주식 반환요청 지연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

# 3. 독립거래단위 간 내부거래 시 준수 기준

- ① (개요) 내부대차거래 이외의 독립거래단위간 거래<sup>\*</sup>의 경우에도 기준과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실행
  - \* 독립거래단위간 장부상 대체거래 등 회사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
- ① 거래 전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내부통제 또는 전산 시스템 운영

- ② 순매수잔고 상태인 독립거래단위만 해당 잔고 범위내에서 양도 가능\*(다만, 오류정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순매도잔고 상태에서 양도 가능)
  - \* 순매수잔고인 독립거래단위도 순매수잔고를 초고하여 이전 불가(오류정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)
  - 순보유잔고가 0 또는 순매도잔고 상태인 독립거래단위는 자신의 순보유잔고를 타 단위로 이전 불가(오류정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)
- ③ 독립거래단위 운영과 관련한 다른 자료들과 같이 독립거래단위 간 내부거래와 관련한 자료\*를 5년간 보관하고 검사·조사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
  - \* 예시) 거래에 관여한 독립거래단위 소속 임직원 내역, 대체거래 등 내부거래 내역 등

# Ⅲ 보고 및 공시

# <주의사항>

- ◈ 순보유잔고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는 '의무자', '대상증권'은 동일하나
- 일임 / 신탁 / 펀드재산 등이 있는 경우의 순보유잔고 계산 방법 등이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
  - **(보고)** 일임/신탁/펀드재산 등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인 경우에만 합산(규정 \$6-31③)
- (공시) 일임/신탁/펀드재산 등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(규정 \$6-31의2①)
- ① (보고·장시 의무 발생 기준) 상장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, 즉, 순매도 잔고 상태로서 아래의 ① 또는 ②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(최초)의무가 발생
- ① 당해 종목의 상장주식 총수 대비 순보유잔고의 비율(이하 '순 보유잔고 비율')이 △0.01% 이하(△0.02%, △0.03% 등)이면서, 순보유 잔고 평가금액(수량×가격)이 1억원 이상인 경우
  - → 공매도 잔고 0.01% 이상 & 공매도 잔고 평가액 1억원 이상
- ②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, '순보유잔고 비율'과 무관하게 의무 발생
  - ➡ 공매도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

- ③ 최초 보고·공시 후 추가 거래가 없더라도 ① 또는 ②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, 매영업일마다 계속 의무 발생
- ② (기준시점) 의무 발생 여부는 매 영업일 자정(24시, '기준시점')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
- 장중 일시적으로 보고·공시기준에 해당하여도 기준시점에서 보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고의무 없음
- ③ (공시 내용) 주식 종목별로 투자자의 성명·주소·국적 등 인적 사항을 한국거래소(정보데이터시스템)를 통해 공시
  -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: 종목명, 종목코드, 시장구분
  - 보고자에 관한 사항 : 성명, 주소, 국적,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,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), 대리인성명 등
  - 공시 의무발생일, 최초 의무발생일(순보유잔고가 기준 비율 또는 금액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)
- ④ (보고 의무) 공매도 거래로 일정 비율 이상의 음의 순보유잔고를 보유한 투자자가 보고·공시 의무자로, 대리인을 통한 보고·공시도 가능하나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의무 위반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
- 공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(자본시장법 §449)

# IV Q&A

◆ 전산화 진행 과정에서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대상 법인들로부터 질의 사항을 접수하여 Q&A를 추가·보완할 예정

- Q1 하루 중 대여자의 대차증권 중도상환 요청 시점에 따라 소유주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?
- □ 일반적으로 매도주문일 내에 상환 요청을 한 주식은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나, 하루 중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 시점에 따라 인도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(예시: T일 오전 12시 이후 요청시 T+3일) 정상적 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일 중 적시(예시: 오전 12시 이전)에 중도상환 요청을 완료할 필요

- 22 담보제공자의 담보주식 소유권이 유지되는 질권설정 방식의 담보제공의 경우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는지?
- ☞ 소유권 이전이 없으므로 소유주식으로 인정
  - ※ 다만, 원채무 상환, 대체담보 제공 등 질권 해제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등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

# Q3 계약 조건상 구체적 차입 수량 등이 추후 결정되는 계약의 경우 차입계약 성립 시점은?

□ 차입 종목, 수량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 부터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

#### 사례

아래 예시와 같이 차입자의 최종 차입 수량 통보, 결제일 및 수수료 협의 등절차가 필요한 경우, 계약조건이 확정된 시점부터 차입계약 성립 및 소유주식으로 인정 가능

(예시) 대여자가 매일 대여 가능 종목 및 수량을 제시하고 독점적 대여를 보증하나, 매도주문 이후 최종 차입 종목·수량 및 결제일, 수수료율 등 중요사항을 별도 협의하는 계약

## O4 독립거래단위 간 인력 중복은 인정되지 않는지?

의 회사별 상황에 따라 각 독립거래단위의 매매목적, 전략 등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일부 인력의 중복은 인정 가능

#### 사례

독립거래단위별로 운용인력은 구분되어 있으나 여러 독립거래단위의 결제업무 등 후선업무를 동일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 각 독립거래단위가 감독규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능

# Q5 시장조성자(MM)의 무차입공매도 판단 단위는?

" 각 시장조성계좌별 독립적 매매 여부 등과 관계없이 법인 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 ('22.2.9. 증선위 의결 참조)

# Q6 예탁결제원 시스템(e-SAFE)상 입고 판단기준은?

□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이 입고되어 예탁원 시스템상 '인도' 상태로 전환된 경우 입고로 인정

#### 사례

(집합투자기구)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 체결 후 수탁사가 거래를 '승인'하고, 예탁 결제원이 승인을 확인한 뒤 계좌대체 방식으로 수탁사 계좌로 증권 입고 및 시스템상 '인도' 상태로 전환한 이후에 집합투자업자가 공매도 주문

### O7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의 점검 방법은?

" 「내부통제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시스템 모니터링 부서 등 공매도와 관련되지 않은 제3의 부서가 수탁 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

#### 사례

(증권사) 공매도 관리부서와 공매도 점검부서(컴플라이언스, 감사 부서 등)가 각각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, 「점검 체크리스트」의 위탁자 확인란은 관리부서 임원, 수탁자 확인란은 점검부서 임원이 서명

- Q8 장외 공매도가 공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?
- □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증권 매매에 대하여 공매도 규제가 적용 되므로 장외거래는 적용 대상이 아님(법 §180① 등)
- Q9 순보유잔고 공시 확대('24.11.1. 시행) 이후 '최초의무 발생일' 작성 기준은?
- □ ① 신규 공시 대상 중 시행일부터 즉시 공시하여야 하는 내역 (음의 순보유잔고 비율 0.01%~0.5%)은 '제도시행일', 이외에는 시행일 이후 '최초로 공시기준에 해당한 일자'를 기재하고, ② 공시 중인 내역(음의 순보유잔고 비율 0.5% 이상)은 기존 일자(최초로 0.5% 이상에 해당한 일자)를 유지